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34
----------	-------

제출년월일 : 2024. 5.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 명칭을 알맞게 수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로 정정.....(안 제11조)
- 기타 표현 등 정비.....(안 제1조 등)

개정조례안 :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 4】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4. 4. 5. ~ 2024. 4. 25.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5】
- 방침결정문 : 【붙임 6】

【붙임 1】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안산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각각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안산시”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입 안 자	실·과 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영식
	담당·팀장 직위·성명	계약2팀장 이미경
	담당자 성명·전화	김종환 (행정 3073)

[불임 2]

신·구조문 대비표

② 주관부서의 장은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생 략)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 -----.

③ 안산시 기부심사위원회 -----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
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
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
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인계의 절차) (현행 제1항 과 같음)